

1. 개정이유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가 안전하게 운영·관리되어야 하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 존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별도 없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7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교대근무조별로 1명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31조의29부터 제31조의31까지를 각각 제31조의31부터 제31조의33까지로 하고, 제31조의28을 제31조의29로 하며, 제31조의28 및 제31조의3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대상기기의 공사·유지 에 관한 업무
2. 검사대상기기의 운전·조작 에 관한 업무
3. 검사대상기기의 확인·점검 및 운전·점검일지 작성 업무
4.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와 관련된 기록의 작성
5.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신청 등에 관한 행정업무
6.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검사대상기기가 가동 중인 경우 선임 구역 내에서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일 1회이상 검

사대상기기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1조의30(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31조의28에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대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제2항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도 포함한다)의 직무 이행에 관한 사항

26.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별표 3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3호, 제25호부터 제29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① ----- ----- ----- 하며,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교대근무조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u>제31조의2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검사대상기기의 공사·유지에 관한 업무</u> <u>2. 검사대상기기의 운전·조작에 관한 업무</u> <u>3. 검사대상기기의 확인·점검 및 운전·점검일지 작성 업무</u> <u>4.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와 관련된 기록의 작성</u> <u>5.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신청 등에 관한 행정업무</u> <u>6.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u>

제31조의28 (생략)

<신 설>

제31조의29 ~ 제31조의31 (생략)

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검사대상기기가 가동 중인 경우 선임 구역 내에서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일 1회이상 검사대상기기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9 (현행 제31조의28과 같음)

제31조의30(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31조의28에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대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31 ~ 제31조의33 (현행

략)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략)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3. (생략) <u><신설></u> 24.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31조의29부터 제31조의31까지와 같음)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23. (현행과 같음) 24. <u>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도 포함한다)의 직무 이행에 관한 사항</u> 25. (현행 제24호와 같음) 26. <u>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u> ③ (현행과 같음)
---	--

[별표 3의5]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

검사의 종류		검사유효기간
설치검사		1. 보일러: 1년. 다만, 운전성능 부문의 경우에는 3년 1개월로 한다.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개조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설치장소 변경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재사용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계속사용검사	안전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및 압력용기: 2년
	운전성능검사	1. 보일러: 1년 2. 철금속가열로: 2년

비고

1.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해당 보일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 설치 후 3년이 지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보일러는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개조검사 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제외한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모두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보일러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만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4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 2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 또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6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등을 제조하는 의약품제조업자로서 같은 표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의 압력용기: 4년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열발생설비 중 터빈에서 나온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 2년

5. 제31조의25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신고 후 2년이 지난 날에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재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은 운전성능검사대상기기가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에너지진단 이후 최초로 받는 운전성능검사를 에너지진단으로 갈음한다(비고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최대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제외한다.

[별지 제12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설치검사
[] 개조검사
[] 설치장소 변경검사
[] 재사용검사
[] 계속사용검사
[] 검사연기

검사대상기기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검사대상	기 기 명	제 조 자 명
기 기	설 치 구 역 (전화번호)	검사증번호
	형 식	용 량
	최고사용압력	버너종류
		사용연료

검사대상	성 명	생년월일
기기관리	자격 종류	자격증번호
자		

시공업자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개조 여부 ([] 예, [] 아니오) 장소변경 여부([] 예, [] 아니오)

검사 요청일	년 월 일	연기사유
운전성능요청일	년 월 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17부터 제31조의20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수수료 (다만, 검사연기신청은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검사별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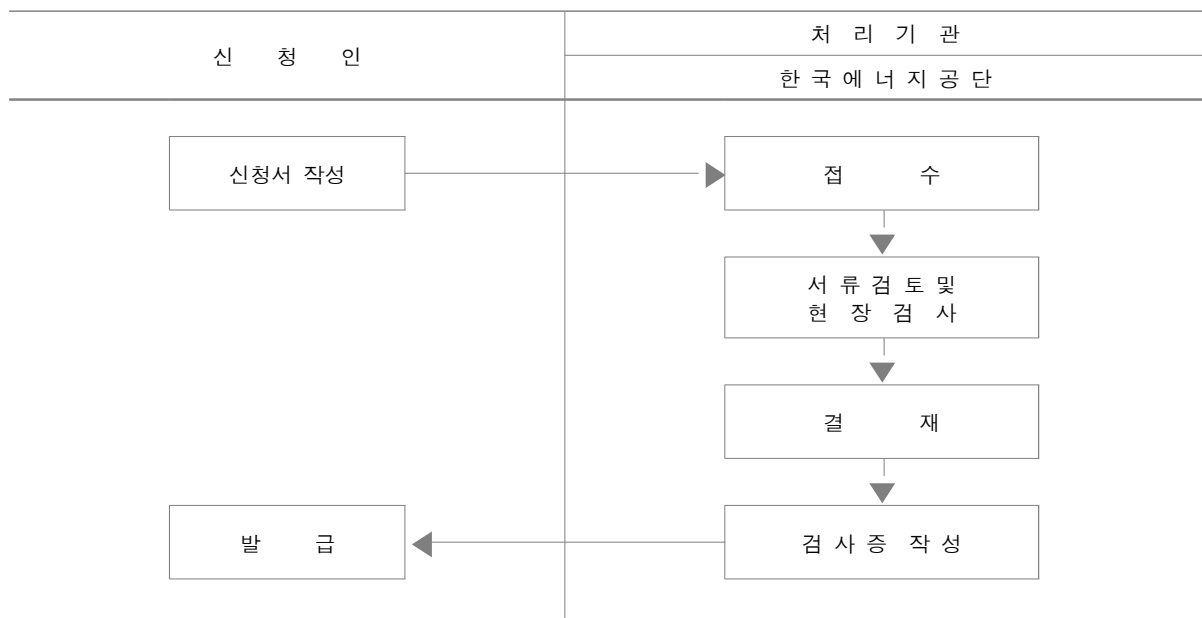
검 사 명	첨 부 서 류
설 치 검 사	1.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2.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성능·구조 등에 대한 설명서 1부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1. 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개조검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1부
계속사용검사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시공업자란은 설치검사 및 설치장소 변경검사의 경우만 적습니다.
2. 검사 요청일란의 운전성능요청일은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상인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검사대상인 기기를 검사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처리기간은 검사 요청일부터 계산합니다.
5. 보일러 계속사용검사 시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열공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 사 대 상 기 기 설 치 신 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 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신고 기기	기기명	제조사명	
	설치일자	설치구역	구조검사증번호
	형식	전열면적	용량
	최고사용압력	버너종류	사용연료
관리자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시공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업자	소재지	(전화번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신고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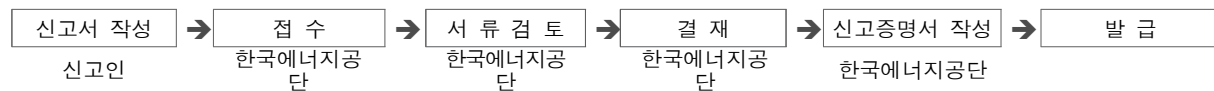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사본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설계도면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9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설치검사증번호 :						
검사대상기기 []				설치검사증 신고증명서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 업 명		
사무소 소재지						
사업소 소재지						
설치구역						
구조검사증번호				설치검사(신고)일자		
기기 명세	기 기 명			용 량	t/h, MW, m³	
	최고사용압력	MPa		상용압력	MPa	
계속 사용 검사	안 전			운 전 성 능		
	유효기간	검사원	확 인	유효기간	검사원	확 인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2항 또는 제31조의2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인		

검 사 대 상 기 기 관 리 자

성 명	생년월일	자격 종류	자격증 번호	선임 일자	검사원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비고					

[별지 제23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 폐 기 신고서 [] 사용중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구역		(전화번호)			
검사대상기기	검사증번호	기기명(형식)	용 량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폐기·중지일자

폐기 또는 사용중지 사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7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3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폐기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 수 한국에너지공단	→	검 토 한국에너지공단	→	대장정리 한국에너지공단	→	확 인 한국에너지공단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5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 임
[] 해 임
[] 퇴 직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선임된 검사대상 기기관리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속 업체명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자 격 종 목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해임되거나 퇴직 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자 격 종 목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 선임일자	설치구역	검사대상기기 검사증 번호	
[] 해임일자			
[] 퇴직일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9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
기기관리자([]선임 []해임 []퇴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선임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증 2. 설치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관리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0. 1.>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 지정
[] 변경지정 신청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31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처 리 절 차

```

    graph LR
      A[신청서  
신청인] --> B[접 수  
기후에너지환경부]
      B --> C[검토 및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
      C --> D[결 재  
기후에너지환경부]
      D --> E[지정서  
기후에너지환경부]
  
```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별지 제28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전자민원(www.kemco.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검사대상기기	검사증 번호	기기명(형식)	용 량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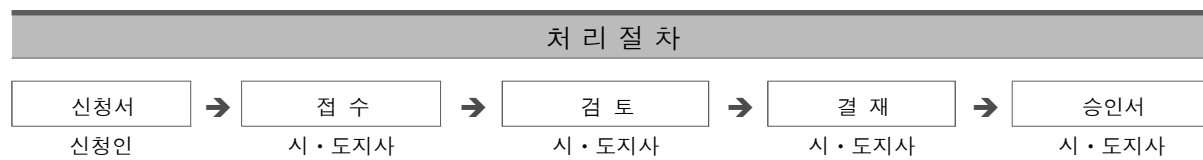
연기사유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



210mm×297mm[백상지 80g/㎡]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승인서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관리자 선임기한	
조치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네 관리자 선임기한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별지 제31호서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직무대행자 지정서

지정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번호	기기명(형식)	용 량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격사항	전화번호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직무대행자				
직무대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직무대행사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정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직무대행자 자격증 사본 1부.
------	------------------